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88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첨부 :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정 1974. 02. 01 조례 제1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이하 "구획정리지구"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액)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한 보상비 기채 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체비지(보류지)매각대금
3. 잡수입

제3조(부과기준) 전조의 부담금은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의 정리전과 정리후의 결정가격을 비교한 차액 및 정리후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리후의 토지결정 가격은 건적가격에 의할 수 있다.

제4조(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부담금에 상당한 토지를 제공할 때
2.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부담금에 상당한 노력이나 물건을 제공할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부담금의 납부) ①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구획정리지구안의 토지로서 대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부담금 추정 등) 구획정리사업종료시 사업비 수지정 산액이 예산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정하여 추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4.02.01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